

가족 사망 시 사회보장국이 귀하를 도울 수 있는 방법



누군가가 사망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회보장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 대부분의 경우, 장의사가 사회보장국에 사망 신고를 하게 됩니다. 귀하는 장의사가 사회보장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고인의 사회보장 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

고인이 생전에 사회보장 제도하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일을해서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격이 있다면 고인의 일부 가족들은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**고인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.**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정보를 신중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생존 배우자가 고인과 함께 살았거나 따로 살면서 고인의 기록에 따라 특정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일시금 \$255이 지급됩니다. 만약 생존 배우자가 없다면, 사망한 달에 고인의 사회보장 기록에 따라 연금 수혜 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지급이 됩니다.
- 다음과 같은 특정 가족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:
 - 60세 이상(장애인의 경우에는 50세 이상)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분
 - 고인의 16세 이하 자녀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연령대의 생존 배우자
 - 고인의 미혼 자녀 중 다음과 같은 경우:
 - 18세 미만인 경우(또는 18세나 19세의 자녀가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정규 학생인 경우), 혹은
 - 18세 이상으로 장애가 22세 이전에 시작된 경우
 - 최소한 생활비의 반을 고인에게 의존했던 62세 이상의 부모, 그리고
 - 특정 상황하에 이혼한 생존 배우자

고인이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, 귀하는 고인이 사망한 달이나 그 이후에 받은 연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사망한 달이 7월이라면, 8월에 지급받은 연금을 반환해야만 합니다. 연금이 자동이체로 지급된다면,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에 연락하십시오. 사망한 달 또는 그 후에 지급 받은 모든 연금을 사회보장국에 반환하라고 요청하십시오. 연금이 수표로 지급된 경우, 고인이 사망한 달 또는 그 후에 지급 받은 수표는 현금으로 바꾸지 않도록 하십시오. 가능한 한 빨리 사회보장국에 수표를 반환하도록 하십시오.

그러나, 수혜 적격 가족들은 연금 수령인이 사망한 달의 사망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사회보장에 관한 문의

더 자세한 정보 및 저희가 발행하는 문서들에 대해 알아보시려면, 저희 웹사이트 www.socialsecurity.gov를 방문하시거나,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1-800-772-1213 번 (청각장애인은, TTY 번호, 1-800-325-0778) 으로 전화하여 주십시오. 저희는 특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, 하루 24시간 운영하는 자동 전화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사회보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**통역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**,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. 통역 서비스는 전화를 할 때나 사회보장 지국에서 직접 상담을 할 때나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무료 전화 1-800-772-1213 으로 전화하십시오.

1번을 누르고 담당자가 대답할 때까지 대기하십시오. 통역관이 귀하의 통화를 도와주기 위해 연결될 것입니다. 업무가 전화로 처리될 수 없을 경우, 사회보장국 담당자와 면담 약속을 잡아 드리며, 귀하가 방문하는 시간에 통역관을 배치할 것입니다.

사회보장 담당자는 귀하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으며, 필요하다면 요구 제기를 위한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. 모든 전화는 비밀을 유지합니다. 저희는 또한 귀하가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꼭 받으시도록 하고자 합니다. 저희가 일부 전화 통화에 대하여 제 2의 사회보장 담당자로 하여금 모니터 하도록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.

